

변경대비표

■ 편드명 : 하나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■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5년 03월 07일

[신탁계약서]

■ 변경사유

-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(하나 인 Best 연금 글로벌통수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)

■ 변경사항
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5 조(자산운용지시 등)	기재상세	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.</p> <p><추가></p> <p>④ <생략></p>	<p>①~②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,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시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현행과 동일></p>
제 28 조의 2(투자신탁의 전환)	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	<p>①<생략></p> <p>1~8.<생략></p> <p>9. 하나 인 Best 연금 글로벌통수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</p>	<p>①<현행과 동일></p> <p>1~8.<현행과 동일></p> <p>9.(삭제)</p>
부칙	-	<추가>	<p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.</p>

[간이투자설명서/ 투자설명서]

■ 변경사유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(하나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)

■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표지	기재사항 보완	하나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	하나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<u>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</u>)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
요약정보 - 투자비용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투자실적추이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운용전문인력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전환절차 및 방법	해지된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삭제	하나인 Best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	(삭제)

■ 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分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가. 운용전문인력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6. 나. [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]	해지된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삭제	하나인 Best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	(삭제)
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	정기갱신	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	<u>1) 이 투자신탁은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VaR)이</u>

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4.03. 01 시행)	<p><u>표준편차(연율화)]이 15.09%임에</u></p> <p><u>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</u></p> <p><u>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</u></p> <p><u>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u></p> <p><u>(생략)</u></p> <p><u>[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]</u></p> <p><u>변경 전 1</u></p>	<p><u>39.37%임에 따라 6 등급 중</u></p> <p><u>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</u></p> <p><u>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</u></p> <p><u>있습니다.</u>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)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</u></p> <p><u>경과되어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</u></p> <p><u>최근 3 년간 일간수익률의</u></p> <p><u>최대손실 예상액(VaR)을 기초로</u></p> <p><u>시장위험 등을 반영한</u></p> <p><u>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.</u></p> <p><u>최대손실 예상액(VaR)은 과거 3 년</u></p> <p><u>일간수익률에서 2.5 퍼센타일에</u></p> <p><u>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</u></p> <p><u>환산 보정계수($\sqrt{250}$)를 곱하여</u></p> <p><u>산출합니다.</u></p> <p><u>[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</u></p> <p><u>따른 개요]</u></p> <p><u>변경 후 1</u></p>
11. 나. 3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4.03. 01 시행)	<u>-</u>	<u>(환매가능여부 표 추가)</u>
11. 다. 전환	해지된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삭제	<p>1) <생략></p> <p>(1)~(8)<생략></p> <p>(9)하나인 Best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</p> <p>2)~6) <생략></p> <p>7) 수익자가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[주식혼합- 재간접형]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.</p> <p>(1)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</p>	<p><u>1) <현행과 동일></u></p> <p><u>(1)~(8)<현행과 동일></u></p> <p><u>(9)(삭제)</u></p> <p><u>2)~6) <현행과 동일></u></p> <p><u>7)(삭제)</u></p>

		<p>제 5 영업일(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6 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.</p> <p>(2)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</p> <p>제 9 영업일(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0 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.</p> <p>※ 투자신탁간의 전환 인 Best 연금글로벌통수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</p>	
13. 나. 집합투자기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3.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(세전기준)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	
라. 운용자산규모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
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	----------------

[변경 전 1]

위험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표준편차	25% 초과	25% 이하	15% 이하	10% 이하	5% 이하	0.5% 이하

주 1)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자산운용(주)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,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습니다.

[변경 후 1]

하나자산운용(주)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와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VaR)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6 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.

위험등급	위험등급의 의미		유의사항	
	투자자산 기준 (설정 3년미만 펀드)	VaR*기준 (설정 3년이상 펀드)		
1등급	매우 높은 위험	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플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50% 초과	위험선호도가 (매우) 높은 투자자를 위함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(매우)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,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2등급	높은 위험	①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50% 이하	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
3등급	다소 높은 위험	①고위험자산에 80%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%이하인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30% 이하	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4등급	보통위험	①고위험자산에 50%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집합투자기구	20% 이하	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, 예·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5등급	낮은위험	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10% 이하	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,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6등급	매우 낮은 위험	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②단기국공채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1% 이하	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,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
- 1) VaR(Value at Risk)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. 상기 표상 VaR 값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**39.37%**의 손실(신뢰구간 97.5%)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
- 2)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자산운용(주)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,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3) "고위험자산"은 주식, 상품, REITs, 투기등급채권(BB+등급 이하),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
- 4) "중위험자산"은 채권(BBB-등급 이상), CP(A3 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

- 5) "저위험자산"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
- 6)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,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.
- 7) 모자형펀드의 경우,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.
- 8)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(Fund of Funds) 형태의 펀드의 경우,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.
- 9) 최대손실률이라 함은,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,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. 다만,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,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,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10)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,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.